

2025년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 사업 기업지원- 해외네트워크연계지원 공고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2월 27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신규 의료기기 산업 성장동력과 신규 시장진출 역량 확보를 지원
*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및 제조업으로 ICT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등이 포함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되어 결합된 제품군을 포함하는 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10. 31.
- 지원내용** : 직접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진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치과 의료 연관 커넥티드 의료기기 제품 서비스 제조·판매 기업
* 대상 제품(예) : 컴퓨터 가이드 수술시스템, CAD/CAM 활용 디지털 보철, 스마트 교정 시스템, 디지털 교합 분석기,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 소재 부품 등
- 지원내역** : 해외 네트워크 연계 지원

구분	지원내역	지원주체	규모
1	해외 마케팅 자료 작성 지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2건
2	해외 병원 대상 기술 마케팅 지원		필요 시 지원
3	B2B 매칭 프로그램 지원		필요 시 지원
4	사업화 및 시장진출지원*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필수, 선택

※ 상세 분야별 지원 규모는 지원내용상세 참조

□ 유의사항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는 사업비 소요정도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때는 평가 점수에 따른 미선정된 차순위 기업에 우선 지원
- 해외 병의원 대상 기술 마케팅 지원 및 B2B 매칭 프로그램 지원은 별도 평가 없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타겟시장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음
- 사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은 선발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별도로 모집하지 않으며, 수혜기업은 Reha·Homecare 2025전시회에 대해서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전시회 기간(3일간) 동안 상주 필수) KIMES Busan 2025전시회, 해외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지원의 경우는 참여 여부 선택 가능
- 추후 선정된 기업은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사업성과보고회 등 기업 참여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기업별 1명 이상 필수 참석 필요)

□ 지원내용

해외 마케팅 자료 작성 지원 (서류 및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시장 및 플랫폼을 선정하여 최적화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언어별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시장 맞춤형 자료 제작 - 타겟 시장별 적합한 소셜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선정 - 다양한 형태의 최적화 콘텐츠 제작 • 개발한 마케팅 자료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마케팅, B2B 매칭 프로그램 등 개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지원규모: 총 2개사/최대 500만원 이내(VAT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자부담
해외 병의원 대상 기술 마케팅 지원 (서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병의원 대상 의료기기 연계 기술교육을 통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치과대학 및 병의원 임상의 대상 기술 교육을 통한 기술 마케팅 지원 - 해외 Key doctor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강화 ※ 별도 기업부담금은 없으나 기술 교육을 위한 제품 지원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설명 등을 위한 기업 인원 참여 필요 • 기술마케팅 추진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에어랑가대학('25. 5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 몽골 울란바토르('25. 6월, 몽골 현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5. 8월, 인도네시아 현지) - 인도네시아('25. 10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B2B 매칭 프로그램 지원 (서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매칭 프로그램 추진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바이어 참여 수출 상담회 개최 - 현지의 검증된 유통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연계 지원 • FORIL 2025 FKG Trisakti 추진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5. 8. 21.~23. - 국내 치과 기업제품 소개 및 전시 - 국내 기업-현지 딜러 B2B 매칭 <p>※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별도 기업부담금은 없으나 홍보를 위한 제품 지원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설명 등을 위한 기업 인원 참여 필요</p>
사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수혜기업 선정시 필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ha-Homecare 2025 (2025.05. 29.~05. 31.)*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참가비(임차료) 및 부스 지원 ▶ 사전/사후 언론보도 등 마케팅 활용 지원 ▶ ※ 전시회기간(3일간) 중 전시 부스 상주 - KIMES Busan 2025*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참가비(임차료) 및 부스 지원 ▶ 사전/사후 언론보도 등 마케팅 활용 지원 - 해외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지원*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상담회 참가지원 • 문의처: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장현성 전임연구원 010-4328-1577 / next@gbia.or.kr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03 04.(화) ~ 03. 20.(목), 17:00 까지 [시간 엄수]
- 접수 및 문의 :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 조영주 전임연구원 (062-608-5899 / jjj1351@chosun.ac.kr)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이메일 접수

□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은 04.09(수) 진행 예정(일정변동 가능)

□ **제출서류** (*서식표기된 서류의 경우 해당지원 세부사업명으로 표기된 첨부파일 사용하여 작성)

No.	서류명	해외마케팅 자료작성	기술마케팅 지원	B2B매칭지원	비고
1	사업신청서	◎	◎	◎	서식1
2	사업계획서	◎			서식2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	◎	◎	서식3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	서식4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서식5
6	기업현황 카드	◎	◎	◎	서식6
7	인증 등 제품·기술력 증빙 자료	△	△	△	서식7
8	우대사항(가점) 증빙 서류	△	△	△	서식8
9	기업부담금 협약서	◎	◎	◎	서식9
10	사업화 및 시장진출지원 참여협약서	◎	◎	◎	서식10
11	수출실적증명서(최근 2년)	◎			서식11
12	등기부 등본(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			
13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최근 2년)	◎			
14	재무제표(최근 2년)	◎			
15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16	기타 확인자료(사본)	△	△	△	

◎ 필수 / ○ 일부필수 / △ 선택(해당시)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증명서 면제

□ **지원방법 및 기업부담금**

○ 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수행기간 내,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투입 기재에 대한 수혜기업 현금성 지출금액의 합계로 증빙(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 불가, 사업비를 공급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 선정 후 협약된 지원금액 이내에서 지원기관의 직접 수행 지원

□ **결과물 제출**

○ 수행 내용에 따른 결과물 및 성과 관리 내용 추가

○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미이행시 향후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는 본 사업의 실적 보고용으로만 활용됨

□ 지원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함
- 신청기업의 제품은 신청기업의 자체생산제품으로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위법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함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류심사(1차):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 서면평가(2차): 기업지원 신청서를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
- 서면평가 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3 충남지식산업센터

□ **평가기준:** 적합성, 내용 및 범위, 필요성, 기업역량,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 [※수출실적 기업 우대]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가 지 표	평 점	
1. 정량평가 (20)	기업신용도 평가	10	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e-3 A- A2- A- 이상(10점) e-4 BBB A3- BBB- 이상(8점) e-5 BB- B0, BB- 이상(6점) e-5 BB- B0, BB- 미만(4점)		
	기업인증	10	-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부설연구소(전담부서), ISO, CE, FDA 등 - 1개(2점), 2개(4점), 3개(6점), 4개(8점), 5개 이상(10점)		
2. 기술성 (40)	기업역량	10	- 수행기업의 역량(인허가 경험, 대표자의 의지 등)		
	파급효과	10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10	- 개발기술의 완성도 및 적합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기술개발추진 전략의 적정성	10	- 기술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사업성 (40)	개발기술의 우수성	10	- 활용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추진 가능성		
	사업화추진 전략의 적정성	10	- 판로개척 가능성 - 판매전략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정도		
	개발제품 시장전망	10	- 시장규모 및 수익성 - 시장진입 및 수출 확대 가능성 정도 - 제품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적절성 정도 - 신규고용, 매출 및 수출에 관한 구체적 계획 여부		
	사전준비성	10	- 기초데이터, 특허 등 신청과제 관련 사전준비정도		
4. 우대사항 (10)	우대사항	6	- 최근 3년 이내 해외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2건(2점), 4건(4점), 6건(6점)		
		4	- 여성, 장애인, 사회적, 녹색 기업 각(1점) 최대(4점)		
평가의견	◎ 평가기준 : 평가점수 70점 미만 과락			합 계	점
심사일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인)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 시에도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